
학 부

학사운영매뉴얼

2021년 10월 07일 현재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Department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차 례

I. 학부생 졸업요건	1
II. 교육학과 전공생의 교직이수	4
1.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4
2. 교육학과 교직이수 희망자의 복수전공	9
3. 교원자격 취득 기준에 관한 일반기준	10
4. 편입생의 교직이수 요건	11
III. 이중 및 다중전공, 복수전공	14
1. 전공에 대한 시행세칙 주요내용 (2016학년도 요람)	14
2. 복수전공 시행세칙 주요내용 (2016학년도 요람)	16
IV. 편입학	17
1. 일반편입학 시행세칙 주요내용(2016학년도 요람)	17
2. 학사편입학 시행세칙 주요내용(2016학년도 요람)	17
V. 소속변경	19
1. 지원자격	19
2. 정원	19
3. 소속변경 지원 전 소속전공과목 이수 요건	19
4. 지원시기	19
5. 심사	20
6. 소속변경 후 교과과정 이수	20
7. 관련 규정	20
VI.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21
1. 본교학생의 외국대학교 수학(2016학년도 요람)	21
VII.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규정	23

1. 평생교육사 과정 교과목 이수 규정	23
2. 평생교육사과정 이수교과목	23
3.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평생교육사과정 대체인정과목	25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25

I. 학부생 졸업요건

입학 년도	[교육학 전공]			[타학과 전공] (타 과 학생이 교육학 이중전공 및 부전공 시 요건)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	교양이수학점 및 교양이수과목	졸업 학점	이중 전공	부전공
96 99	전공기초과목: 교육학개론, 교육과 컴퓨터 교육기초통계방법 (총 9학점) 전공선택과목 : 35학점 이상 (총 44학점 이상)	전체교양필수 : 국어1, 국어2, 영어 1, 영어2, 기독교의 이해 영역 중 한 과 목 총 13학점 교과대교양선택 : 교양선택 12개 영역 중에서 5개 영역 이 상 총 29학점 (총 42학점 이상)	140	44	96학년 이후 입학생-부전공 필수과목 : 9학 점 ① 교육학개론 ② 교육기초통계방법 ③ 교육과 컴퓨터 [+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교육철학, 교 육과정의 원리,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생활지 도론, 교육측정과 검사이론, 교육연구방법론, 교육사회학,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경 제학(이상 11과목) 중 12학점 선택]
2000 - 2002	전공선택과목 : 36학점 이상(교직이수 42학점)	(학부대학기준)	126	36	교육학개론, 컴퓨터활용 기초통계, 교육정보 화와 컴퓨터,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교육 철학, 교육과정의 원리, 교육공학과 정보화, 교육심리학, 생활지도론, 교육측정과 검사이 론, 교육연구방법론, 교육사회학,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경제학(이상 14과목) 중 21 학점 선택
2003	전공선택과목 : 36학점 이상(교직이수 42학점) 공통 : 모든 학생은 자신의 전 공 또는 타 전공분야의 3000 및 4000 단위 교과목 중에서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	(학부대학기준)	126	36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교육과정의 원리, 교육공학과 정보화, 교육심리학, 생활지도론, 교육측정과 검사이론, 교육연구방법론, 교육 사회학,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경제학, 교육사상사, 인적자원개발기초(이상12과목) 중 21학점 선택
2004	1) 교육학 단일전공자 (타학과 부전공이수자포함): 48학점 이상 2) 교육학 전공자 중 타학과 이중 또는 다중전공하는 자: 36학점 이상(교직이수 42학점) 공통 : 모든 학생은 자신의 전 공 또는 타 전공분야의 3000 및 4000 단위 교과목 중에서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	(학부대학기준)	126	36	교육학부 전공 선택 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 수
2005 - 2008	1) 교육학 단일전공자 (타학과 부전공이수자포함): 48학점 이상 2) 교육학 전공자 중 타학과 이중(다중)전공자 36학점 (전공과목) 이상 (교직이 수 42학점) 공통 : 모든 학생은 자신의 전 공 또는 타 전공분야의 3000 및 4000 단위 교과목 중에서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	(학부대학기준)	126	36	교육학부 전공 선택 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 수 교육학 전공자중 타학과 부전공자 (교직이수 30학점)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 부전공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교직부전공 선발 은 없으며, 교직복수전공제도만 시행될 예정 임.

2009 - 2012	1) 교육학 단일전공자 (타학과 부전공이수자포함): 48학점 이상 2) 교육학 전공자 중 타학과 캠퍼스내 이중(다중)전공자 36학점(전공과목)이상 (교 직이수 50학점) 공통 : 모든 학생은 자신의 전 공 또는 타 전공분야의 3000 및 4000 단위 교과목 중에서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	(학부대학기준)	126	36	교육학과 전공선택 과목 중 21학점 포함 (교직 부전공 제도는 없음) 13학번부터 미래를 위한 교육학(EDU1001) 전공필수.
2013 ~	1) 교육학 단일전공자 (타학과 부전공이수자포함): 48학점 이상 2) 교육학 전공자 중 타학과 캠퍼스내 복수(다중)전공자 36학점(전공과목)이상 (교 직이수 50학점) 공통 : 1) 모든 학생은 자신의 전공 또는 타 전공분야의 3000 및 4000 단위교과목 중에서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 2) '미래를 위한 교육학' 13학 번부터 전필	(학부대학기준)	126	36	교육학과 전공선택 과목 중 21학점 포함 (교직 부전공 제도는 없음)

교차인정

- 1) 전공필수과목인 미래를위한교육학(EDU2002)은 2010학번부터 2018학번 입학생까지는 필수교양-국가와사회공동체 영역으로, 2019학번 입학생부터는 대학교양-국가와사회 영역으로 교차인정된다.
- 2) 2017학번 입학생까지는 전공필수와 '필수교양-국가와사회공동체' 영역으로 중복인정되며, 학점은 전공필수(3학점) 또는 필수교양(3학점) 중 선택할 수 있다.
- 3) 2018학번 입학생부터는 전공필수(3학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교양-국가와사회공동체(대학교양-국가와사회)' 영역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필수교양(대학 교양)영역으로 대체인정 받고자하는 경우, 그 학점만큼 전공선택 과목을 추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일전공 기준 전공선택과목 최소학점 45→48학점, 복수전공 최소학점 33→36학점)

세부 사항

1) 대체과목 인정

- 2003학년까지의 입학자 중 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등을 위하여 특정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해당 교과목이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 경우, 학부장의 승인을 거쳐 유사한 과목을 대체인정 할 수 있다(예: 교육사회학 - 교육문제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단 재수강의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인정하지 않는다.
 - 96-99학번 교육학 전공자의 경우, 『교육학개론』은 『미래를 위한 교육학』을 대체인정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체육교육과에 개설된 『교육학개론』을 대체인정 할 수 있다.
 -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96~02학번 학생의 경우, 『교육학개론』이 개설되지 않을 때, 『미래를 위한 교육학』으로 대체인정 한다.
 - 교육학 전공과목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학부장이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03학년까지의 입학생 중 교육학을 부전공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예: 졸업학기 문제) 학부장의 승인을 거쳐 유사한 과목을 대체인정 할 수 있다.
 - 교환학생으로 국외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대체 인정할 수 있으나 연세대학교 국제교류부에서 학점교환을 인정한 대상학교 이외에는 동일 또는 유사과목이라 하여도 대체 인정 하지 않는다.

2) 『교육실습』의 이수학점 수 포함

- 『교육실습』 2학점과 『교육현장연구지도』 1학점을 포함한 총 3학점을 교육학과의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간주하여 전공 이수 학점 수에 포함한다. (단, 교직이수 학점 인정 시에는 전공이 아닌 교직실습 학점으로만 인정.)

3) 기타

- “교직 부전공”은 “교육학 부전공”, “교직복수전공”, “복수전공”과는 별도의 사항으로 교직에 관해서는 교육과학대학 사무실([교육과학관 401호](#))에 상세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
- 부전공 및 복수/이중전공 승인자의 경우, 입학년도의 졸업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 교환학생 학점인정은 졸업사정 때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 교직원홈페이지(<http://web.yonsei.ac.kr/teacher>)

II. 교육학과 전공생의 교직이수

1.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과목

1) 99학년도 이전 입학자 대상

자격증 표시과목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교과목명	학점
교육학	교육철학	- 교육철학 - 교육 사상사	3
	교육심리	- 심리학 개론 - 교육심리학	3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원리 - 교육과정 개발	3
	교육평가	- 교육측정과 검사이론 - 교육연구방법론 - 교육평가론	3
	교수·학습이론	- 교수학습이론 - 교수방법론 - 컴퓨터활용 교수	3
	교육사회	- 교육문제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 교육사회학의 이론과 사상	3
	교육실습	교육실습	3

세부 사항

- 1)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학점은 교육학과 전공 이수학점에 포함된다.
- 2) 7개 기본 이수 영역에 걸쳐 각 영역에서 옆에 제시한 1개 과목 이상(총 21학점 이상) 수강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2)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 대상

학과 (전공)	자격증 표시과목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교과목명	학점번호	학점
교육학과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학 고전강독	JA255 ↓ EDU2112	3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원리	JA252 ↓ EDU2105	3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	JA351 ↓ EDU3104	3
		교육철학	교육사상사	JA383 ↓ EDU3107	3
		교육심리	교육심리학	JA251 ↓ EDU2108	3
		교육평가	교육평가론	JD044 ↓ EDU3133	3
		교육사회학	교육문제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JD009 ↓ EDU2107	3
		교육행정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00-04) 교육행정입문(05)	JA355 ↓ EDUu2113	3
		학교-학급경영	교육경제학 개론	JD011 ↓ EDU2103	3
		학생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이론과 실제	JA467 ↓ EDU4118	3
		교육공학	교육공학과 정보화	JA453 ↓ EDU4128	3
		평생교육(또는 교사론)	평생교육론	JA365 ↓ EDU3122	3
		교육과 컴퓨터	교육정보화와 컴퓨터	JD006 ↓ EDU2109	3
		도덕교육론	(없음)	JA375	3

세부 사항

- 1) 위의 14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옆의 지정된 과목 중 총 15학점 이상 수강 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2) 각 영역 중 옆에 제시된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수강교과목명이 변경된 경우(재수강 이 가능할 경우)는 변경된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 2003학번부터는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은 전공 선택으로 개설되어있어도 교직학점에 포함되고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2009학년도 교육학부 입학자 대상으로 한 교직과정

① 기본 이수 과목 목록: 21학점 (7과목) 이상

2008년		2009년 개정	
기본이수영역	교과목명	기본이수영역	교과목명
교육학 개론	교육학 고전강독	교육학 개론	미래를 위한 교육학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원리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원리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육사상사	교육철학	교육사상사
교육심리	교육심리학	교육심리	교육심리학
교육평가	교육평가론	교육평가	교육평가론
교육사회학	교육문제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교육사회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교육행정의이론과실제(00-04) 교육행정입문(05)	교육행정	교육행정입문
학교-학급경영	교육경제학 개론	학교-학급경영	교육지도성
학생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학교상담론	상담의 이론과 실제
교육공학	교육공학과 정보화	교육공학	교육공학
평생교육 (또는 교사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 (또는 교사론)	평생교육론
교육과 컴퓨터	교육정보화와 컴퓨터	삭제	
도덕교육론	(없음)	삭제	
		교육사 (한국교육사 포함)	한국교육사
		교육정책론 (또는 교육조직관리론)	교육정책
		교육경제론	교육경제학개론
		비교교육학	비교교육학
		교육연구방법	교육연구방법론

가. 전공 50학점 이상 (기본이수 과목 7과목/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8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나. 교직 22학점 이상 (이론 7과목/14학점이상, 교직소양 2과목/4학점이상, 교육실습 4학점(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다. 다만, 나.항의 교직이론 7과목/14학점이상은 전공과목으로 대체 가능. 이 경우 전공취득학점은 64학점, 교직 취득학점은 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결국, 총 취득학점은 72학점으로 동일함.)

② 교과교육론 영역 교과목: 8학점 (3과목) 이상

구분	대체인정 과목	학점
교과교육론	교육학 교육론	3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육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	3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교육학 논리 및 논술교육	2(3)
기타 교과교육영역		

③ 교직소양 영역 교과목: 4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교직실무』 2학점 이상

④ 교육실습 영역 교과목: 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⑤ 교육학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직과목(교직이론 영역) 대체 인정 과목

:14학점 이상, 7 과목 이상의 요건 모두 충족

교직과목		대체인정과목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육학개론	2	전공	미래를 위한 교육학	3	
교육철학및교육사	2	전공	교육사상사	3	
교육과정	2	전공	교육과정의 원리	3	
교육평가	2	전공	교육평가론	3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전공	교육공학	3	
교육심리	2	전공	교육심리학	3	
교육사회	2	전공	교육사회학	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전공	교육행정입문	3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14학점)을 전공 50학점 내에 중복인정이 가능하나(단, 교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함)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⑥ 졸업전체 평균 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함.

4) 2013학년도 교육학부 입학자 대상으로 한 교직과정

① 교직과목 이수 교과목

2013학번부터		
영역	교과목	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교육철학및교육사	2
	교육과정	2
	교육평가	2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용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포함)	2
	교육심리	2
	교육사회	2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생활지도 및 상담	2
교과교육	교과교육영역은 전공학점으로 변경됨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2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 실제	2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2
	교육봉사활동	2
계		22학점

가.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교과목 7과목/21학점), 교과교육영역(3과목/8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나. 교직 22학점 이상(이론 6과목/12학점이상, 교직소양 3과목/6학점이상, 교육실습 4학점(학교현장실습 2학점, 교육봉사활동 2학점)이상) 이수해야 함(교과교육영역은 전공이수학점으로 포함됨).

다. 적성, 인성 검사를 실시하여 적격판정을 2회 이상 받아야 함(전공 75점, 교직 80점 이상).

라. 전공과목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세부 사항

- 1) 2008학번까지 : 교직이론 14학점, 교과교육 4학점, 교육실습 2학점, 모두 2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2) 2009학번~2012학번 : 교직이론 14학점, 교직소양 4학점, 교육실습 4학점, 모두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교과교육영역은 전공이수학점으로 포함됨)
- 3) 00~08학번은 교과교육영역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학점 42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직 복수전공자(연계전공 포함)는 해당학과 교과교육론 및 해당학과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 4) 교직소양영역은 2009학번부터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09~12학번은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13학번부터는 이 두 과목과 함께 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 실제를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 5) 교직이론영역의 과목을 국내 교환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 그 대학에서 반드시 “교직”으로 개설된 동일한 과목에 한하여 인정이 됨. 이 경우 파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학부장의 확인을 필한 “대체과목인정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2. 교육학과 교직이수 희망자의 복수전공

1) 복수전공

- ① 교육학과 전공자 중 타학과로 복수전공을 하여 교직이수를 희망할 경우,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반드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장소는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타학과 사무실이며 신청기간은 2학년 2학기 종강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② 위의 승인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 학점을 이수했다라도 관련 전공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 ③ 교직복수전공 신청불가학과 : 간호학과
자격종별이 다른 전공을 복수전공 할 경우에는 교육실습도 각각 중등(현장)교육실습, 사서실무실습, 유치원(현장)교육실습, 전문상담실무실습, 영양실무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2) 0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복수전공을 통한 교직이수 요건

- ① 교직복수전공 시 반드시 이수예정자로 선발이 되어야 이수가 가능하다. 이수예정자 선발 정원은 대체로 해당 전공의 교직이수정원(입학정원의 20%)에 준한다. 선발은 3학년 1학기 초 3월에 신청을 받아 이루어진다.
- ② 교직복수전공도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공통사회 및 공통과학 연계전공은 관련 전공을 제1전공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수할 수 있다. 공통사회는 사회학, 사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만이, 공통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시스템과학, 생화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만이 이수할 수 있다. 교육학과 학생이 관련 전공을 제2전

공으로 복수전공 할 경우에는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3) 교원자격증 신청

- ① 신청기간 : 2월 졸업예정자 12월초 / 8월 졸업예정자 6월초
- ② 신청장소 : 교육과학대학 사무실(교육과학관 401호)
- ③ 유의사항
 - 전공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위 신청기간 중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신청기간에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3. 교원자격 취득기준에 관한 일반기준

가. 졸업기준 충족 필수

나. 주전공 자격 취득 기준

구 분	내 용
이수요건	① 제1전공자/복수전공자: 가) 전공 학점 : 각 50학점 이상 이수 (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포함) 나) 교직 학점 : 22학점 이상 이수 ② 부전공: 교직 부전공은 더 이상 신규로 운영하지 않음
이수시 유의사항	①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은 졸업요건의 이수학점과 이수교과목이 다름 -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이 36학점이라도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필히 전공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② 복수전공의 자격요건은 취득하였으나, 제1전공의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복수전공의 자격증도 발급되지 않음 ③ 소속변경이 되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서 제외되어 자격증 발급 불가

다. 교직과목 이수학점

영역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교직이론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 4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22학점

라. 사범계학과(교육학부, 체육교육학과) 학생이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교직 복수전공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복수전공에서도 주전공인 제1전공과 동일한 전공 이수 학점 기준(기본 이수과목, 교과교육영역을 포함하여 50학점 이상)에 따라 이수해야 함.

마. 전공 기본이수과목이 해당 전공에서 개설되지 않는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는 반드시 이수는 하되, 교직을 위한 전공학점에는 제외됨.

(예, 사회학 전공 교직 이수예정자가 기본이수과목인 정치학입문,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법학개론을 이수하면, 기본이수과목으로는 인정되지만 전공이수학점 50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아 추가 전공과목 이수 필수)

바. 자격종별이 다른 전공을 복수전공 할 경우에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함.

세부 사항

※ 학과(전공)별 교과교육영역은 해당 학과나 교원양성실무위원회에 문의.

4. 편입생의 교직이수 요건

가. 일반 편입

- 1) 자격: 전적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승인을 받은 학생이 동일 전공(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로 본교에 편입하여, 해당 교직학과의 교직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교육학부와 체육학과로 일반편입시에는 전적대학에서 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원가능)
- 2) 선발: 교직과정 홈페이지 참조
- 3) 조건(2011학년도 편입학자 기준)

가)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편입한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의 기준과 동일함.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과목/21학점, 교과 교육영역 3과목/8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나) 교육학부/체육교육학과에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편입학한 경우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7개 21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전체 평균 성적이 75점 이상

* 교육학부 편입 시 ‘교육학’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교육학’ 자격증으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드물기에 타 전공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 복수전공이수가 바람직함.

* 전공과목은 전적대학과 편입대학의 전공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가능하며,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전공과목을 전적대학에서 복수전공으로 인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나. 학사 편입

- 1) 자격: 2009학년도 학사편입 전형부터 학사 편입생의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허하기로 2008. 5. 27 교원양성실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하였기에 교육학부 및 체육교육학과(2008년 편입생 부터) 포함 교직학과에서 교직 이수 불가.
- 2) 2010. 1. 21 개정된 학사편입학 시행세칙에 의거, 학사편입생은 복수전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7호 기준대상자로 연계전공을 구성하는 표시과목 관련학과에 편입학한 자는 연계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3)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교직 과정이 개설된 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7호 기준 대상자)의 경우에만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 7호 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7호 기준 대상자는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아도 되며, 교직과정 승인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음. 교직이수요건을 갖추어 교직을 이수한 후, 졸업 전(12월 혹은 6월)에 교육과학대학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됨.
- 4)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 소지자가 ‘영어’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 단, 소지 자격증 종별이 다른 자격종별을 부여하는 교직설치학과로 편입학한 경우에는 교직이수 불가.
 - * 7호 기준 대상자의 자격증 범위: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교원자격증
 - * 7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교사 자격증: 실기교사, 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이상

* 조건: 전공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3과목 8학점) 이상 이수, 교직소
양 4학점 및 교직봉사활동 2학점 이상 이수, 교직실습 면제 및 성적기준 75점 적용
단, 2010학년도 편입학자까지: 전공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5개, 14학점 이상 포함) 이
수 + 교과교육영역 2과목 이상 이수 - 교직실습 면제 및 성적기준 적용치 않음

5) 편입대학의 전공과 다른 분야를 전공하고 사범계학과 혹은 교직과정학과에 편입 시 전적 대학에
서 졸업한 복수전공에 대한 교사자격증 부여 불가

III. 이중 및 다중전공, 복수전공

1. 전공에 대한 시행세칙 주요내용 (2016학년도 요람)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0조에 따라 2중/다중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21>

제 2 조 (범위)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 또는 학부는 2중/다중전공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글로벌융합공학부 입학생은 캠퍼스내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11.01.20>

②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대학 및 학과(전공으)로 2중/다중 전공은 허용하지 않는다.

1. 의학·치의학·간호학과·약학·법학·건축학(5년제)·테크노아트학부·아시아학부·음악대학 모든학과 <개정 2011.01.20>

2.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보건과학과(야간)

③ 교육학과 및 체육교육학과에 대한 2중/다중 전공은 정원의 결원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

제 3 조 (입학년도별 허용 범위)

① 1996학년도 입학생은 동일 대학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원주(서울)캠퍼스 학생은 원주(서울)캠퍼스에 없는 전공을 서울(원주)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② 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동일 계열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원주(서울)캠퍼스학생은 원주(서울)캠퍼스에 없는 전공을 서울(원주)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③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동일캠퍼스 내에서 2중 및 다중전공을 할 수 있다. 다만, 원주(서울)캠퍼스 학생은 원주(서울)캠퍼스에 없는 동일계열의 전공을 서울(원주)캠퍼스에서 2중전공으로 할 수 있다.

④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이중 및 다중전공의 신청은 입학한 계열 내에서 전공승인을 받은 후에 할 수 있다.

⑤ 원주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에서 2중 및 다중전공할 수 있는 학과 및 전공은 “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제7조 ②항에서 정한 바와 같다. <본항 신설 2010. 1. 21>

⑥ 신촌-국제캠퍼스간 복수전공은 신촌의 캠퍼스내 복수전공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다.<본항 신설 2011.01.20>

제 4 조 (전공 결정)

①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서울캠퍼스 학생은 2학년말에 전공을 정하고 3학년 1학기부터, 원주캠퍼스학생은 1학년말에 전공을 정하고 2학년 1학기부터 해당 학과장의 지도를 받는다.

②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2학기 또는 3학기 이수 후에 입학계열 내에서 전공을 신청한 후 전공별 진입승인에 따라 전공이 결정된다. 전공신청 및 승인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③ <삭제 2010. 1. 21>

④ 대학 또는 전공분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각 전공 영역의 학생수를 조절할 수 있다.

⑤ 원주캠퍼스 2002년도 이후 신입생의 전공 신청은 학부에 따라 1학년 말 또는 졸업하는 학기에 신청한다.(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 참조)

제4조의 2 (캠퍼스 내 복수전공)

① 2중전공은 제1전공을 배정받은 자 또는 학과별 입학자 가운데 3학기 이수 후부터 졸업 직

전 학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캠퍼스내 복수전공 선발인원은 지원인원의 50%와 지원학과 정원의 30% 가운데 적은 수 이상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2전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계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계전공 시행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1.01.20>

④ 제2전공의 승인은 제2전공 신청학기까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의 성적, 서류 및 면접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 실시 방법 및 반영비율은 학과별로 정할 수 있다. 예·체능계 학과 또는 전공에서는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공승인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1. 21]

제4조의 3 (다중전공) 제3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절차를 두지 않으며, 이수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전공을 승인한다. [본조 신설 2010. 1. 21]

제4조의 4 (이중 및 다중전공 이수요건)

① 2중 및 다중전공자(연계전공자 포함)는 전공별로 최소 36학점 이상의 전공학점을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01.20>

② 전공별로 교육과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필수교양과목 중 2과목(6학점) 이내에서 필수이수지정을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0. 1. 21]

제 5 조 (학위 수여) 2 이상의 전공분야에서 규정하는 전공학점 이상을 모두 이수한 자는 전공분야에서 규정하는 2중/다중전공이 표기된 학위를 받는다. 다만,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이중 및 다중 전공으로 표기된 학위를 받을 수 없다.

제 6 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 7 조 (캠퍼스별 전공운영) 필요한 경우에는 캠퍼스별로 전공에 관한 사항을 별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세부 사항

1. 교육학과에서 타학과로의 이중전공 및 부전공

가. 교육학과 전공자 중 타학과로 이중전공을 희망할 경우, 이중전공 승인 신청기간에 반드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장소는 이중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타학과 사무실이며 신청기간은 2학년 2학기 종강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교육학과 전공자 중 타학과로 부전공을 희망할 경우, 부전공 요건에 따라 학점을 이수한 후 졸업 신청 시 부전공을 승인받으면 된다.

2. 타학과에서 교육학과로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 1) 타학과 전공자 중 교육학과로 이중전공을 희망할 경우, 복수전공 승인 신청 기간(기말고사 다음 주) 안에 교육과학대학 사무실로 신청하여야 한다(인터넷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 2) 선발은 이전학기까지의 성적과 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 3) 교육학을 복수 및 다중전공(제2전공 및 제3전공)하는 자는 교원 자격증을 신청할 수 없다.
- 4) 교육학을 이중전공 하는 타전공 학생의 경우, 입학년도에 해당하는 교육학과의 졸업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2. 복수전공 시행세칙 주요내용 (2016학년도 요람)

제 1 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0조에 따라 복수전공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범위)

-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과(전공)를 복수전공 학과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과(학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복수전공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3 조 (종류 및 이수자격) 복수전공은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캠퍼스내 복수전공, 캠퍼스간 복수전공으로 구분한다.

-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은 학칙 제51조에 의거 본대학교 졸업예정자이어야 하며, 전공별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2.11.29>
- ② 캠퍼스내 복수전공은 “전공에 관한 시행세칙”을 따른다. <개정 2010. 1. 21>
- ③ 캠퍼스간 복수전공은 “원주캠퍼스 전공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 4 조 (신청 및 허가)

-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의 추천서를 받아 소정의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필기시험을 과할 수도 있다.

제 5 조 (이수학점)

-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 이수자는 해당 학부(전공)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5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이밖에 학부(전공) 또는 학과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지정하여 추가로 이수시킬 수 있다.

제 6 조 (재학연한)

- ① 졸업예정자 복수전공이수자는 최소 3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 및 복수전공의 통산 이수학기는 1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의학계열의 이수 연한은 의학계열 졸업예정자는 본과 2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일반학과 또는 학부 졸업예정자는 본과 1학년부터 수강하여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의학계열의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휴학연한은 재학연한의 1/2을 초과 할 수 없다.

제 7 조 (학위수여)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면 학칙 제50조에 따라 학사학위 증서를 복수전공 이수 시 제1전공 학사학위 증서와 같이 수여한다.

제 8 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세부 사항

- 교육학을 복수전공으로 하더라도 교원자격증은 발급받을 수 없다.

IV. 편입학

1. 일반편입학 시행세칙 주요내용(2016학년도 요람)

-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편입학생의 학사운영과 학점인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편입 학생 관리를 원활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대상) 이 세칙은 3학년 일반편입학생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제 3 조 (학점인정 및 절차)
- ① 3학년 편입학생의 학점인정 범위는 대학·학과별 졸업학점 1/2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1.20>
 - ② 학점인정 절차는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비치된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인정표”에 본 대학교 교과목으로 인정받아 성적표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 ③ 교양과목(학점)의 인정은 교양과목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공과목(학점)의 인정은 해당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전적대학 이수과목(학점) 중 본 대학교의 전공이나 교양과목으로 대체 인정받지 못한 과목의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범위 내에서 해당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선택으로 인정된다.
 - ⑤ 학점인정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본 대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에만 학점을 대체 인정할 수 있다.
 - ⑥ 전적대학의 성적이 “D” (본 대학교 기준) 이하인 성적은 인정할 수 없다.
- 제 4 조 (학사운영)
- ① 편입학생은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
 - ② 부전공 또는 이중(다중)전공, 연계전공, 복수전공은 할 수 있다. 단, 편입학생의 전적대학에서의 부전공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채플) 3학년 일반편입학생은 2학기 이상 채플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 6 조 (이수학기) 일반편입학생 중 5학기 편입학생은 6학기를 초과등록 할 수 없다.
- 제 7 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2. 학사편입학 시행세칙 주요내용(2016학년도 요람)

- 제 1 조 (신청자격)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 제 2 조 (학사편입 학과 또는 학부의 범위) 제1전공에 관계없이 어느 학과 또는 학부라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학과, 치의학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 조 (심사방법) 지원자에게는 필답고사, 서류평가 및 면접을 실시한다.
- 제 4 조 (이수학점 등록) 학사편입학자는 대학에서 정하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필수로 58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1>
- ① 해당 학과 또는 전공에서 지정한 소정의 전공과목 이수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학과 또는 전공의 결정에 따라 기초과목을 지정하여 이수시킬 수 있다.
 - ③ 학사편입생은 캠퍼스내복수전공, 캠퍼스간복수전공, 졸업예정자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1>

④ <삭제 2010. 1. 21>

제 5 조 (등록) 최소 4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6학기를 초과 등록할 수 없다.

제 6 조 (채플) 학칙 제51조 ⑤항 및 제45조 ②항에 준하여 학사편입학자(타교출신자)는 최소 이수 학기 4학기 중 2학기 이상 채플에 출석하여 급제(P)하여야 한다.

세부 사항

제 4조 3항에 따라 학사편입학자는 이중전공,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을 할 수 없으나 부전공은 가능하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자(동 학년에 해당하는 편입자 포함)부터 학부과정에서의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제도를 폐지함.

V. 소속변경

1. 소속변경 주요내용(2016학년도 요람)

1) 지원자격

- ① 3학기 이상 수료자부터 3학년까지 1회에 한해 허용. 동아시아국제학부로의 소속변경은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
 - ※ 휴학생도 지원할 수 있으나, 6학기 이수를 완료한 후에는 소속변경을 지원할 수 없음
- ② 예·체능계열 입학자는 소속변경을 할 수 없음
- ③ 글로벌융합공학부, 테크노아트학부, 아시아학부 및 의학계열·치의학계열·약학과·간호학과·보건과학과(야간)로는 소속변경할 수 없음
- ④ 보건행정, 임상병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방사선과로의 소속변경은 2학년까지의 모집단위 입학정원 결원 범위 내에서만 허용
- ⑤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전공배정자에 한하여 전공으로만 소속변경을 허용함
- ⑥ 주·야간간 소속변경은 정원 결원범위 내에서만 허용

2) 정원

- ① 캠퍼스 내 소속변경
 - ※ 당초입학생을 포함하여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10% 이내에서 선발
 - ※ 단, 자유전공자 및 정원 외 학생은 정원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② 캠퍼스 간 소속변경
 - ※ 1·2차 전공배정 후 입학정원이 미달된 학과에 한하여 허용
 - ※ 1·2학년 제적인원의 20%이내에서 허용

3) 소속변경 지원 전 소속전공과목 이수 요건

- ①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소속변경 지원 전까지 소속학과 전공과목 중 최소 9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②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소속학과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시기

- ① 캠퍼스 내 소속변경: 중간고사 이후 지정된 기간
- ② 캠퍼스간 소속변경: 12월(연 1회 실시)

5) 심사

① 지원서류

- ※ 캠퍼스 내 소속변경: 소속변경 지원사유 및 학업계획서를 학사포탈에서 입력
- ※ 캠퍼스 간 소속변경: 소속변경 지원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소속변경 사유서(소정양식), 소속변경 후 학업계획서(소정양식), 소정의 전형료

② 심사 단계

- ※ 1차 소속학과 심사: 학생의 소속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이수요건 충족여부 심사
- ※ 2차 지원학과 심사: 서류심사와 면접(구술시험 가능) 실시

6) 소속변경 후 교과과정 이수: 전입한 학부 또는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7) 관련 규정: **고등교육법** 29조3항, 학칙 23조~28조, 소속변경시행세칙, 원주캠퍼스 소속변경에 관한 내규

세부 사항

- 1) 2009년 이전 입학자는 소속학과 지정요건(미래를 위한 교육학 이수)을 충족하여야 한다.
- 2) 2010학번 이후 입학자는 소속변경 지원 전까지 전공과목 9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3) **2016년부터 '미래를 위한 교육학'**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9학점 이상 이수 시 소속변경 가능하다.

VI.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1. 본교학생의 외국대학교 수학(2016학년도 요람)

제 4 조 (교류대학 및 연수프로그램)

① 교류대학은 본교와 교환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대학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요청으로 교무처장이 승인할 경우 교환대학에서 수학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② 해외 연수프로그램은 소속대학 지도교수와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 또는 우리대학 기관장이 추천하여 교무처장이 승인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제 5 조 (지원자격) 외국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 및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교에서 1학기 이상을 재학한 자(교환학생은 1년 이상 재학한자) 단, 졸업예정자(최종학기는 본교에서 수학하여야 함)는 제외 함.<개정 2010. 1. 21>
2. 학업성적이 3.00/4.00(4.30) 이상인자.(교환학생 및 1학기이상 외국대학 수학자에 한함)
3. 지원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 응시한 토플(TOEFL)에서 아래 지정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교환학생 및 1학기이상 외국대학 수학자에 한함)
 - 자연, 예·체능계: PBT 520, CBT 190, iBT 68점 이상
 - 그 외 계열: PBT 550, CBT 213, iBT 79점 이상<개정 2011.01.20>
4.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5.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6. 의예과 및 치의예과 4학기 학생은 진급심사 종료 전까지 학점인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후 1학기 일반휴학에 동의하는 학생에 한함.<개정 2010. 1. 21>

제 6 조 (지원절차 및 시기)

① 교환학생 지원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 (또는 학부장)의 허락을 받아 국제처에 제출하며, 신청절차 및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허락을 받아 교무처 학적관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
2. 입학허가서(연수허가서)
3. 수학계획서
4. 지도교수 추천서
5. 기타 필요한 서류

③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해외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는 정규학기의 경우 개시 3개월 전까지, 계절 학기의 경우 개시 2개월 전까지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1>

제 7 조 (선발절차)

① 교환학생 선발은 국제처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10. 1. 21>

② 유학생과 연수생은 소속대학 지도교수, 학과장(또는 학부장) 및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무처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수학기간) 수학기간은 최대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환학생인 경우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 9 조 (취득학점 및 학기의 인정)

① 교환학생, 유학생 또는 연수생이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2학기이상 수학자는 졸업학점의 1/4 이내.
2. 1학기이상 수학자는 졸업학점의 1/8 이내.
3. 계절학기 이수자의 경우 7학점 이내.
4. 연수생의 경우 3학점 이내.

② 유학생 또는 연수생이 휴학기간 중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학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본교 등록 후 재학기간 중 파견된 유학생의 경우에 한하여 학기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③ 교환학생, 유학생 또는 연수생이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평량평균 환산에서 제외한다.

④ 삭제.<개정 2010. 1. 21>

제 10 조 (학점인정 절차)

① 교환학생 및 유학생은 수학기간이 끝나는 즉시 수학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와 학점취득인정원에 국제처(교환학생에 한함) 및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1>

② 연수생은 연수프로그램 주관 기관장이 발급하는 연수사실 증명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증명서와 학점취득인정원에 학과장(또는 학부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21>

③ 교무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학점취득인정원을 심사하여 학점인정을 승인한다.

제 11 조 (기타)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VII.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규정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학과: 전 학과(2009년도 이전 입학생)

평생교육사 2, 3급 자격증 취득 가능 학과: 전 학과(2009년도 이후 입학생)

1. 평생교육사 과정 교과목 이수 규정

1) 교과목 이수에 관한 규정

교과목 이수는 2학년 1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이수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 이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졸업학점에 포함된다.

2) 평생 교육실습을 위한 명부등록에 관한 규정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자는 이수과목 중 2과목(4학점~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교육실습을 위한 등록을 평생교육사 과정 운영위원회에 매년 5월, 10월에 본인 서명으로 필하여야 한다.

3) 평생교육 실습비에 관한 규정

(1) 과정 이수자는 평생교육 실습을 3학년 2학기부터 방학기간 중 4주간(2009년도 이전 입학생은 3주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정 이수자는 실습비를 교육실습을 위한 명부 등록시 평생교육사 과정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납부처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과정 이수자는 도중에 포기하거나 또는 본인의 학점미달 및 성적불량으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더라도 납부한 실습비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4) 학칙변동에 따른 규정

(1) 학칙변동(휴학, 복학,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 본적 이동 등)이 되는 학생은 반드시 평생교육사과정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 및 변동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5) 기타규정

위 제반규정을 지키지 못하여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2. 평생교육사과정 이수교과목

1) 2009년도 이전 입학생

평생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50호, 2000. 3. 13.자 공포)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 교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영역	교과목	학점	비고
필수	평생교육현장실습	0(P/NP)	실습+7과목
	평생교육학개론	2	
	평생교육경영학	2	
	성인학습및상담론	2	
	원격교육활용론	2	
	인간자원개발기초	2	

선택	평생교육방법론	2	3과목 이상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2	
	청소년교육개론	2	
	여성교육개론	2	
선택	노인교육론	2	3과목 이상
	직업과 윤리	2	
	기업교육의원리와실제	2	

* 교육학부 전공과목 중 위 과목과 동일 교과목명(유사인정 교과목명)의 경우 평생교육사과정으로 인정 가능하나, 평생교육사과정 과목은 교육학부 전공과목으로 인정 불가

2) 2009년도 이후 입학생

평생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607호, 2008. 2. 14.자 공포)에 규정되어 있는 교과목 및 학점은 다음과 같다.

영역	교과목	학점	비고
필수	평생교육론	3	15학점 이상
	평생교육방법론	3	
	평생교육경영론	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	
	평생교육실습(4주간)	3	
선택	아동교육론	3	1과목 이상
	청소년교육론	3	
	여성교육론	3	
	노인교육론	3	
	시민교육론	3	
	문자해독교육론	3	
	특수교육론	3	
	성인학습및상담	3	
	교육사회학	3	1과목 이상
	교육공학	3	
	교육복지론	3	
	지역사회교육론	3	
	문화예술교육론	3	
	인적자원개발론	3	
	직업·진로설계	3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3	
	기업교육론	3	
	환경교육론	3	
	교수설계	3	
	교육조사방법론	3	
	상담심리학	3	

* 교육학부 전공과목 중 위 과목과 동일 교과목명(유사인정 교과목명)의 경우 평생교육사과정으로 인정 가능하나, 평생교육사과정 과목은 교육학부 전공과목으로 인정 불가

3.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평생교육사과정 대체 인정 과목

영역	교과목	대체인정 교과목
필수	평생교육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학	평생교육경영론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성인학습및상담론	성인학습및상담
	인간자원개발기초	인적자원개발론
	원격교육활용론	원격교육론
선택 (3과목 이상)	청소년교육개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개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노인교육론
	직업과윤리	직업·진로설계
	기업교육의원리와실제	기업교육론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1) 자격:

(1) 2009년도 이전 입학생: 재학생으로서 평생교육사 과정 이수교과목20학점(평균80점)이상 이수하고 평생교육실습을 필한 자.

(2) 2009년도 이후 입학생

① 2급 자격증: 평생교육사 과정 운영위원회에 등록된 재학생으로서 30학점(평균 80점)이상 이수하고 평생교육실습을 필한 자.

② 3급 자격증: 평생교육사 과정 운영위원회에 등록된 재학생으로서 21학점(평균 80점)이상 이수하고 평생교육실습을 필한 자.

2) 신청기간: 전기(2월 졸업예정자): 2월 초

후기(8월 졸업예정자): 8월 초

3) 신청장소: 교육학과 사무실 - **교육과학관 420호**

4) 구비서류: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매

(2) 졸업예정증명서 1매

(3) 성적증명서 1매

(4) 경력증명서 및 이수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가족관계증명서

(6)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및 실습일지

5) 유의사항: 평생교육 실습을 신청한 학생은 실습한 다음 학기 수강 신청시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 해야 한다.